

구미 도시관리계획(문화공원)  
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

구 미 시

# 구미 도시관리계획(문화공원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4년말,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천오백만명 규모이며 유기동물 발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, 유기동물 관리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
- 나. 구미시는 “반려동물 문화공원”을 조성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-관리·교육-재입양 등 동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,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 조성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)을 신설하고자 함
- 다. 이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치 :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-79 일원
- 나. 면적 : 16,995m<sup>2</sup>
- 다. 내용 :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) 신설

### 3. 추진경위

가. 2025. 11 ~ 12월 :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(11.13 ~ 12.05)

나. 2025. 11월 : 시의회 의견청취

### 4. 향후 추진계획

가. 2026. 1월 :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나. 2026. 2월 : 구미시 고시

### 5. 의견제시 기한 : 2025. 12. 31일 까지

### 6. 참고사항

가. 구미 도시관리계획(문화공원) 결정(변경)(안) 등

나. 관계법령

# [붙임] 구미 도시관리계획(문화공원) 결정(변경)(안) 등

## 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및 도면

### 【공원 결정(변경) 조서】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A	반려동물 문화공원	문화공원	옥성면 구봉리 746-79	-	증)16,995	16,995	-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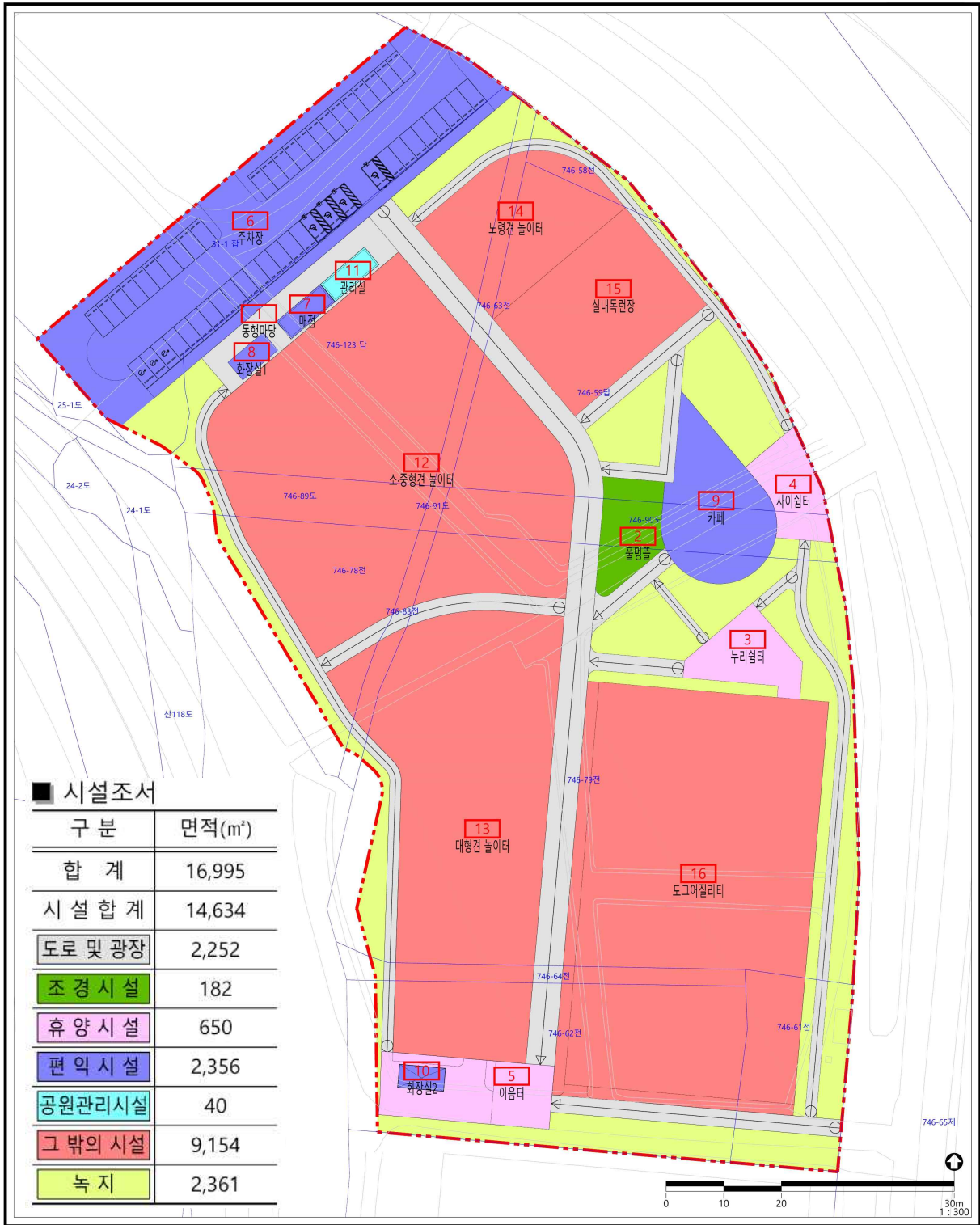
### 【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】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A	반려동물 문화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문화공원 신설 - A: 16,995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 신설</li> </ul>

### 【공원A】



# 나. 토지이용계획도 “안”



# 관계법령

## 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

자 하는 경우

2.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,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·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

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주민”은 “지방의회”로 본다.

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## 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①~⑥ 생략

⑦법 제28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

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1.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, 제38조의2, 제39조,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. 다만,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2.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. 다만,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(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- 가. 도로중 주간선도로(시·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·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·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나. 철도중 도시철도
  - 다.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 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  - 마. 유통업무설비
  - 바. 학교중 대학
  - 사. 삭제
  - 아. 삭제

- 자.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- 차. 삭제
- 카. 삭제
- 타. 삭제
- 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- 하.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
- 거. 수질오염방지시설
- 너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소 관 부 서		도시계획과
입 안 자	과 장	김 현 호
	팀 장	이 재 학
	담 당 자	이 경 민 (480-5402)